

제공일자	2014.8.28(목)	담당자	김경환 수석연구원	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	연락처	02-3775-9054	총 3매

제목 : 보험연구원, 『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』 보고서 발간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 김경환 수석연구원은 『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』 보고서에서 보험산업의 개인정보법제 일원화와 보험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제안함.
- 개인정보법제 일원화는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추진 중에 있으나,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, 보고서에서는 시급한 문제부터 해소해나가는 단계별 일원화 방안을 제시함.
- 한편, 보험산업의 경우는 보험범죄의 방지 등 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동의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사기 적발자 명단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.

□ 보험연구원은 동 보고서에서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으로 적용법률의 불명확·중첩적용 및 보험산업의 특성 미반영을 제시하고 있음.

- 현행 개인정보법제하에서는 보험회사가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거래경로나 수집정보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*됨에 따라, 적용법률이 불명확하고 중첩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함.

* 보험산업의 규제법인 보험업법을 제외하더라도, i) 오프라인으로 수집한 보험정보에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되고, ii) 오프라인으로 수집한 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며, iii) 온라인으로 수집한 보험정보에는 신용정보법 외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, 이에 더하여 iv) 거래경로를 불문하고 신용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충 적용됨.

- 한편, 보험거래의 경우는 정보주체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경우*가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동의수령이 용이하지 않으나, 우리나라의 법제상으로는 엄격한 동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, 보험범죄예방·중복보험확인 등의 업무에서조차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임.

* 피보험자가 여럿 있고(공동피보험자) 그 중의 한 명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등에서처럼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(생명보험의 경우는 보험수익자)가 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,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제3자(피해자)인 경우 등임.

□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개인정보법제 개선방안으로서 ‘적용법률 일원화’와 ‘보험개인정보의 활용근거 마련’을 제시하고 있음.

-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적용법률 불명확과 중첩적용 해소를 위해서는 **적용법률의 일원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임.**

—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, 적용법률 일원화를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이나 각계 의견의 조율 등이 필요하여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, 이 보고서에서는 **단계별* 추진을 제안하고 있음.**

* 1단계: 개인정보보호법률 간 해석기준 및 보험분야 가이드라인 마련

2단계: 개인정보보호법률간 체계 재정비(현재의 일반법-특별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복규제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, 정보통신망법 적용 배제)

3단계: 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적용법률의 일원화

- 한편,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**보험회사 상호 간에 보험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므로, 공동이용의 경우 ‘제3자 제공’보다 동의규제를 완화하되, 이용목적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**을 제시함.

— 즉, 보험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사전동의와 사후통지 및 연간 이용내역을 철저히 알려주되, 보험범죄 방지 등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목적일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동의나 통지의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임.(표 참조)

— 특히,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사기 적발자 명단, 보험청약 거절자 명단 또는 보험인수 유의자 명단 등의 활용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.

* 미국 ISO, 영국 범죄·사기방지국, 프랑스 보험사기방지국에서도 보험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보험범죄자(적발자) 명단을 공유

<표> 보험개인정보 제공목적별 개인정보 보호규제 차등화 방안

제공목적	공동이용		제3자 제공		연간이용 내역통보
	동의	통지	동의	통지	
보험범죄 방지	×	×	×	×	×
할인할증 등 보험요율 산출	×	×	×	×	○
중복보험 확인	×	×	×	○	○
보험인수 심사	×	○	○	○	○
보험마케팅에의 활용	○	○	○	○	○

붙임 : 조사보고서 「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」 요약본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http://www.kiri.or.kr>